

의안번호	제2025-03호
의안제목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
제 의 자	이사장 정 동 희
회의일자	2025. 3. 28.(금)
비 고	2025년 제4차 이사회 의결('25. 3. 21.)

1. 의결사항 :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 승인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
2. 제의근거 : 정관 제45조
3. 제의취지 : 2025년 제4차 이사회('25. 3. 21.)에서 의결한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자 함
4. 주요 내용

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업무 추가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회원자격 부여

(1) 개정 배경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정('23.6) 및 시행('24.6)
 - 분산에너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24.7)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정관 반영 필요
-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거래를 위한 회원 등록 및 정산 등의 규칙 개정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규칙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추진 근거 >

- 분산에너지법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제2항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중략)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초과발전량 거래)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중략) 남는 전력에 한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2) 개정 내용 : 제5조, 제9조, 제12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업무를 전력거래소 업무에 추가

-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업무 :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 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등

□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 회원 자격 부여

-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 → 정회원
- 남거나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 → 준회원

□ 분산에너지사업자 회원 중 발전설비용량 2만kW 이하인 경우 등록비·연회비 면제

나. 직접구매수수료와 전력거래수수료의 통합

(1) 개정 배경

- 회원사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전력거래수수료, 직접구매수수료*로 이원화되어 있음

* 수전설비 용량이 3만kVA 이상 전기사용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시 부담

- 전력거래 서비스의 동질성과 타 전력구매자(판매, 구역전기사업자 등)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부과체계를 전력거래수수료로 단일화하고자 함

<참고> '16년 11차 이사회('16.12.28.) 시 수수료 체계는 유지하되 직접구매 수수료와 전력거래수수료를 동일 수준으로 일치시킨 바 있음

(2) 개정 내용 : 제12조

- 직접구매수수료를 전력거래수수료와 통합

※ 단,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27조(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에 대한 개정이 승인된 이후부터 적용시행

다. 기관 규모에 따른 임원 임명절차 구분 명확화

(1) 개정 배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기관 규모*에 따라 임원 임명절차와 임명권자가 달라짐

* 공운법 시행령 제22조 1항 1호 : 총수입액 1천억 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

- 거래소 직원 정원은 '24년 말 기준 495명, '25년 1분기 말 511명이며, 경영 여건에 따라 향후 500명을 하회할 가능성 있음
- 현행 정관은 대규모 기관일 경우의 임원 임명절차와 임명권자를 본문에서, 소규모 기관일 경우에는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내용 : 제36조

- 임원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를 기관이 대규모 기관일 경우, 소규모 기관일 경우 모두 본문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

< 현행 [근거 : 대규모 기관(본문), 소규모 기관(부칙)] >

구 분	대규모 기관		소규모 기관	
	임추위	임명권자	임추위	임명권자
이사장	○	(산업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산업부장관 임명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산업부장관 임명	×	산업부장관 임명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	산업부장관 임명	×	산업부장관 임명
감 사	○	(기재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기재부장관 임명

붙임: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19차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 1부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제5조(업무)</p> <p>① 거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 23. (생략)</p> <p>24. <신설></p> <p>2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p>	<p>제5조(업무)</p> <p>① 거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 23. (생략)</p> <p>24. <u>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사업에 관한 업무</u></p> <p><u>25.</u>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에 따른 해당 업무의 반영 · 24호 조항 신설에 따른 종전 24호의 번호 변경
<p>제9조(회원의 자격)</p> <p>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8. (생략)</p> <p>9. <신설></p> <p>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9. (생략)</p> <p>10. <신설></p>	<p>제9조(회원의 자격)</p> <p>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8. (생략)</p> <p><u>9. 분산에너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남는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u></p> <p>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9. (생략)</p> <p><u>10. 분산에너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특구 내 잉여전력 거래 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분류 · 분산특구 내 부족/잉여전력 거래 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준회원으로 분류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제12조(등록비 등)</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p> <p>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p> <p>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u>직접구매자에 대한 직접구매수수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구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비 연회비, <u>전력거래수수료, 직접구매수수료 및</u> 수소발전입찰시장의 거래수수료의 징수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p>	<p>제12조(등록비 등)</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p> <p>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u>및 분산에너지 사업자</u></p> <p>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삭제></p> <p>⑤ (생략)</p> <p>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비 연회비, <u>전력거래수수료 및</u> 수소발전입찰시장의 거래수수료의 징수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하는 회원에 2만kW 이하인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 · 직접구매수수료를 전력거래 수수료와 통합 · 직접구매수수료를 전력거래 수수료와 통합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제36조(임원의 임면)</p> <p>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p> <p>②~③ (생략)</p> <p>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u>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u></p> <p>⑤~⑥ (생략)</p>	<p>제36조(임원의 임면)</p> <p>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u></p> <p>②~③ (생략)</p> <p>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u></p> <p>⑤~⑥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규모에 따른 이사장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구분 명확화 · 기관 규모에 따른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구분 명확화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⑦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거래소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p>	<p>⑦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u>거래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규모에 따른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구분 명확화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⑧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u>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p> <p>⑨~⑪ (생략)</p>	<p>⑧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u>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u></p> <p>⑨~⑪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규모에 따른 감사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구분 명확화
	<p>부칙 (2025.00.00.)</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00.00.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경과규정) 제12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2.7조(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에 대한 개정이 승인된 이후부터 적용한다.</p>	